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37호
----------	--------

제출년월일 2026. 1. 20.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충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안 제26조)
- 정원의 총수 : (현행) 1,719명 → (조정) 1,755명(+3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현행) 1,684명 → (조정) 1,720명(+36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 5)
- 총 정원 : (현행) 1,719명 → (조정) 1,755명(+36명)
 - 일반직 정원 조정 : (현행) 1,678명 → (조정) 1,714명(+36명)
 - 6급 이하 : (현행) 1,583명 → (조정) 1,619명(+36명)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6년 인건비 내에서 조치(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1. 2. ~ 1. 12.(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나) 경 기 도 : 기획담당관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19명”을 “1,7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84명”을 “1,720명”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정책기획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유승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한지혜(☎2100)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55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714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7	48	2	7	6	14
	6급 이하	1,619	-				
	전문경력관	4	-				
별정직	소 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 계	32	-				
	지도관	5			5		
	지도사	27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719명</u>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684명</u></p> <p>2. (생 략)</p>	<p>제26조(정원의 총수) ----- ----- <u>1,755명</u> ----- -----.</p> <p>1. ----- <u>1,720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p>	<p>[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사무국</th> <th style="width: 10%;">작업관</th> <th style="width: 10%;">사업소</th> <th style="width: 10%;">읍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719</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시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7">일반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77</td> <td style="text-align: center;">48</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6급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83</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전문경력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별정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급 상당</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급상당 이하</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연구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연구관</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연구사</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지도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지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작업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19	-					정무직	소 계	-					시 장	1					일반직	소 계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7	48	2	7	6	6급 이하	1,583	-					전문경력관	4	-					별정직	소 계	-					5급 상당	-					6급상당 이하	-					연구직	소 계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	소 계	-					지도관	5		5			지도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사무국</th> <th style="width: 10%;">작업관</th> <th style="width: 10%;">사업소</th> <th style="width: 10%;">읍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5</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시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7">일반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급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9</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전문경력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별정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급 상당</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6급상당 이하</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연구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연구관</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연구사</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지도직</td> <td>소 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지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작업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55	---					정무직	소 계	---					시 장	---					일반직	소 계	---					2급	---	---				3·4급	---	---				4급	---	---	---	---	---	5급	---	---	---	---	---	6급 이하	1,619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소 계	---					5급 상당	---					6급상당 이하	---					연구직	소 계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	소 계	---					지도관	---		---			지도사	---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작업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19	-																																																																																																																																																																																																																																																																	
정무직	소 계	-																																																																																																																																																																																																																																																																	
	시 장	1																																																																																																																																																																																																																																																																	
일반직	소 계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7	48	2	7	6																																																																																																																																																																																																																																																													
	6급 이하	1,583	-																																																																																																																																																																																																																																																																
	전문경력관	4	-																																																																																																																																																																																																																																																																
별정직	소 계	-																																																																																																																																																																																																																																																																	
	5급 상당	-																																																																																																																																																																																																																																																																	
	6급상당 이하	-																																																																																																																																																																																																																																																																	
연구직	소 계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	소 계	-																																																																																																																																																																																																																																																																	
	지도관	5		5																																																																																																																																																																																																																																																															
	지도사	-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작업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55	---																																																																																																																																																																																																																																																																	
정무직	소 계	---																																																																																																																																																																																																																																																																	
	시 장	---																																																																																																																																																																																																																																																																	
일반직	소 계	---																																																																																																																																																																																																																																																																	
	2급	---	---																																																																																																																																																																																																																																																																
	3·4급	---	---																																																																																																																																																																																																																																																																
	4급	---	---	---	---	---																																																																																																																																																																																																																																																													
	5급	---	---	---	---	---																																																																																																																																																																																																																																																													
	6급 이하	1,619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소 계	---																																																																																																																																																																																																																																																																	
	5급 상당	---																																																																																																																																																																																																																																																																	
	6급상당 이하	---																																																																																																																																																																																																																																																																	
연구직	소 계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	소 계	---																																																																																																																																																																																																																																																																	
	지도관	---		---																																																																																																																																																																																																																																																															
	지도사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김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기획관, 감사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기획관은 시정 홍보,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미래전략국, 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의회협력, 조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일몰, 군·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제, 소송,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 관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자산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2. 후생 노무, 공무원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주민자치, 대외협력,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사회·자연 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미래도시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정책, 인구정책, 신야간정책, 통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공간정보,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5.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및 사업, 노사민정, 청년정책, 외국인고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분석·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자치, 교육협력,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 종무(宗務), 예술,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관광사업, 관광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 보훈, 통합돌봄, 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묘지, 매장·화장, 장애인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가족지원, 상호문화, 반려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수질총량, 환경안전, 환경인허가, 환경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정책, 에너지산업,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및 단속,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 음식물류,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정책, 친수공간 조성, 하천관리, 해강안, 철책제거, 방재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어항, 어촌뉴딜, 무인도서, 공유수면, 내수면,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물류정책, 교통시설, 주차시설,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개선, 버스 정책, 마을버스, 택시화물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도로 건설 및 토지 보상, 마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점용,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검사, 의무보험, 자동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승인,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 운영, 청사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정보 및 지적,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에 둔다.

제1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관리, 농업지원 및 유통,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 가축방역 및 동물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4.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육성 및 연구
5. 농업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 등 교육훈련
6.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관련 교육
7.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2.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사무) 사업소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 가.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 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마. 정수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운영 및 관리
 - 바. 원·정수 수질관리 및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 사. 지하수 이용신고 등 지하수 관리
 - 아. 오수, 분뇨(가축포함)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도시사업본부
 - 가.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도시녹화 및 산림휴양,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마.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3조(읍·면·동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행정 동·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읍·면·동장 등) ①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제25조(사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 운영, 주민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1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68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5명

제27조(정원채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 북부보건센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김포시 일원
통진읍보건지소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통진읍 일원
양촌읍보건지소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 일원
대곶면보건지소	김포시 대곶면 읍생로 83-23	대곶면 일원
월곶면보건지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 일원
하성면보건지소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 일원
고촌읍건강생활지원센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 일원
학운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양촌읍 학운리, 유현리, 대포리
대벽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22번길 7	대곶면 대벽리, 대능리, 약암2리
송마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	대곶면 송마리, 대명리, 석정리, 신안리, 쇠암리, 약암1리
성동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252번길 42	월곶면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	월곶면 개곡·조강리, 통진읍 귀전리·고정리 하성면 가금2리~3리
마조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	하성면 가금1리, 마조·시암·마근포리, 양택리, 후평리
석탄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6번길 10	하성면 석탄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맑은물사업본부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공원도시사업본부	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별표 3]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5% 이내	24% 이내	34% 이내	30% 이내	4% 이상	0.4% 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 율	25% 이내	50% 이내	25%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19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678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7	48	2	7	6	14
	6급 이하	1,583	-				
	전문경력관	4	-				
별정직	소 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 계	32	-				
	지도관	5			5		
	지도사	27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1,719명 → 1,755명, 증 36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증가 : 1,892,763천원

- 증원 직급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6	-	-	3	15	10	8	
인건비 (직급별)	1,892,763	-	-	77,156	58,725	46,034	40,010	
증가액		-	-	231,468	880,875	460,340	320,080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 인건비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직렬별 변동 가능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인건비	소 계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시 비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 공무원 인건비 인상·동결 등 감안하여 연 3% 인상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내에서 조치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팀장 유승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지방세 수입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세 출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인 건 비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재원 조달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지방세수입	1,892,763	1,949,546	2,008,032	2,068,273	2,130,321	10,048,93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